2026년 1월 가족친화제도 실적

확 인 항 목	기준인원	실 적	비 고
주 52시간 근로 준수 여부	87명	87명	임원, 파견 제외
임원 노사협의회 참여 여부		-	-
출산 전·후 휴가 사용 후 고용유지 직원[1]	-	-	-
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직원[2]	-	-	-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직원[3]	-	-	-
유연근무제 사용 직원	87명	24명	임원, 파견 제외
가족친화직장교육 실시 현황	-	-	-
자녀학자금을 지원받은 직원		-	-
가족휴양시설 이용 직원		-	-
가족돌봄휴직 사용 직원		-	-
가족돌봄휴가 사용 직원		7명	이○원 외 6명

확 인 항 목	기준인원	남	여	비 고
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직원[4]	5명	-	1명	이○주
남·여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 직원		-	-	
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직원	6명	1명	-	박○수

1) 출산 전·후 휴가 종료자
  -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도 고용유지로 인정
2)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근로자 수
3) 복무규정 제21조2에 따른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직원
4) 기준일 현재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